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95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조인철·주철현·문진석

서천호 · 한정애 · 정진욱

박용갑・박민규・노종면

박수현 • 황정아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 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 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5</u>	<u>2030년</u>
<u>년 12월 31일</u> 까지 제1호 각 목	<u>12월 31일</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	
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	
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②·③ (생 략)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저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 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1	• 2	(혂행과	간은)
Ι.	· 4.	(17 % 17	7 7 7

2.	(3)	(현행과	같음)

데25조의7(내국병	법인의	문화선	<u></u> 산업
전문회시	-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	1			
	- <u>2030</u> ኒ	년 12월	31일-	
	.			
1. • 2. (ই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고	가 같음)		